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2년 1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 제한으로 인하여 농업기반시설, 농기계, 보관창고 등 농업관련시설의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

○ 농업·임업·어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를 허용하는 용도 지역에 녹지지역을 추가함으로써, 다른 용도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, 농어입인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일부 개정·시행됨에 따라 군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,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일부 개선·보완 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상 용어중 산림분야 통계자료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하고 민원인에게 불필요하게 규제되는 사항을 삭제함(안 제 18조)

○ 기존 “입목축척”을 “ 입목축적”으로 개정하고, “입목본수 산출방법” 규정 사항을 삭제함. (안 제18조제1항제1호 각목 및 제5호)

나.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60%로 완화함.(안 제57조)

○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·처리시설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(미곡의 선별.보관 가공시설 3만제곱미터) 미만인 시설

○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업 관련 시험·연구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

○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·보관시설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

다. 군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의무화 및 수당 지급을 규정함. (안 제66조의 2)

라. 군수가 입안한 군관리계획에 관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둠. (안 제66조의 3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농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

○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4조

○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, 제1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

나. 경상북도 준칙안 내용 : 별첨과 같음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라. 기 타

○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○ 입법예고(2012. 1. 13 ~ 2012. 2. 13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○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“입목축척”을 각각 “입목축적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7조(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) ①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·생산관리지역·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「농지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.

②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.

1. 「농지법」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·처리시설(성주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·처리시설에 한정한다)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[미곡의 선별·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]미만인 시설
2. 「농지법」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업 관련 시험·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
3.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·보관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

③제2항에 따른 건축물은 성주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또는 성주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농어업 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.

④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「농지법」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건축 가능하다.

⑤제2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성주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1. 해당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·처리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신축 또는 증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
2. 녹지지역내 건폐율 완화로 인해 해당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고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

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6조의2(전문위원) ①법 제113조제5항에 따라 군계획 등에 관한사항을 조사·연구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군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.

③전문위원은 토지이용, 건축, 주택, 교통, 공간정보, 환경, 법률, 복지, 방재, 문화, 농림등 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.

제66조의3(군계획상임기획단) 법 제116조에 따라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군수가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·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·지도 및 조사·연구를 위하여 성주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 되는 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.

제71조 중 “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”를 “군계획위원회(공무원 제외)의 위원이나 전문위원에게”로, “관련 조례가”를 “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1제2호에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적용례) 이 조례는 시행 후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개발행위허가의 기준) ①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.	제18조(개발행위허가의 기준) ①----------. 1. --------입목축적----------입목축적----------. ----------입목축적 ----------입목축적 ----------.
1. 대상토지 입목축척이 우리군 평균 입목축척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. 다만,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척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, 입목축척 산정방식은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다.	
가.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6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60퍼센트 미만인 경우	가. (삭제)
나.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6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60퍼센트 미만인 경우	나. (삭제)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5.임상은「산지관리법」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지역	5. (삭제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57조(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)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·생산관리지역·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「농지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.	제57조(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) ①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·생산관리지역·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「농지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. ②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. 1. 「농지법」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·처리시설(성주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·처리시설에 한정한다)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[미곡의 선별·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]미만인 시설 2. 「농지법」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업 관련 시험·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.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·보관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③제2항에 따른 건축물은 성주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또는 성주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농어업 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.

현 행	개 정 안
	④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「농지법」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건축 가능하다. ⑤제2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성주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1. 해당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·처리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신축 또는 증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2. 녹지지역내 건폐율 완화로 인해 해당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고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
<신 설>	제66조의2(전문위원) ①법 제113조제5항에 따라 군계획 등에 관한사항을 조사·연구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 ②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군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. ③전문위원은 토지이용, 건축, 주택, 교통, 공간정보, 환경, 법률, 복지, 방재, 문화, 농림등 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66조의3(군계획상임기획단) 법 제116조에 따라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군수가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·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·지도 및 조사·연구를 위하여 성주군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.
제71조(수당 및 여비)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71조(수당 및 여비) ---------- 군계획위원회(공무원 제외)의 위원이나 전문위원에게---------- 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1제2호에서 ----------.